

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172
의결 연월일	

제안연월일 : 2011년 6월 29일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회

□ 개정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과태료부과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정당한 이유없이 감사 또는 조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. (안 제25조제2항)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5조의2(과태료부과) ① 법 제41조제5항 및 영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별표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②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통보로 시장이 부과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<u>제25조의2(과태료부과) ① 법 제41조 제5항 및 영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별표에서 정한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통보로 시장이 부과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u></p>

[별표]

과태료 부과기준

(제25조2제1항 관련)

부 과 대 상	과 태 료	비 고
1.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		출석요구 불 응 1회는 1일 간의 불출석 을 말한다.
가. 해당 감사 또는 조사시 출석거부 3회 이상	500만원	
나. 해당 감사 또는 조사시 출석거부 2회	400만원	
다. 해당 감사 또는 조사시 출석거부 1회	300만원	
2.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자		
가. 해당 감사 또는 조사시 증언거부	200만원	